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신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5. 10. 13.

발 의 자 : 신상진 · 김상훈 · 이한성
김을동 · 송영근 · 안상수
정미경 · 박상은 · 이학재
함진규 · 강석호 · 김태원
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(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)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,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서 공공 수송 부담률이 47%로 버스(53%)와 대등한 여객수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전용차로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.

따라서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,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1조제2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택시에 1인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1조(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<단서 신설></p>	<p>제61조(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--. <u>다만,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택시에 1인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.</u></p>